

발행번호 2-210-2014-15988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화번호 02)530-3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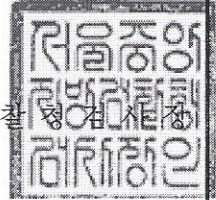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14. 9. 30.

수 신 조태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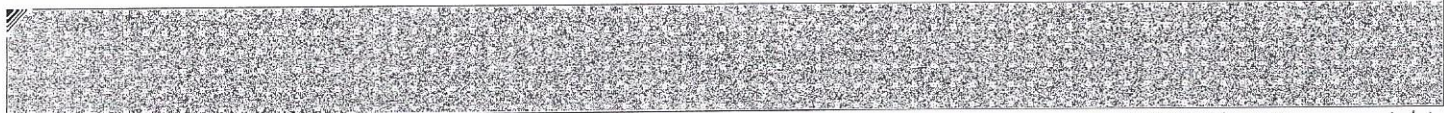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처장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 형제6650호
② 고 소 인 성 명	조태욱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 명 정윤모
	④ 주민등록번호 630319-1*****
⑤ 죄 명	가.정치자금법위반
⑥ 처 분 검 사	오종렬
⑦ 처 분 년 월 일	2014. 9. 23.
⑧ 처 분 요 지	가-기소유예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 9. 23.

사건번호 2014년 형제6650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오종렬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 I. 피의자 정윤모
- II. 죄 명 정치자금법위반

III. 주 문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없고, 본건은 (주)KT 노동조합 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라 전국에 있는 12개 지방본부에서 근로자들 상대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중앙본부에 전달하였고, 중앙본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당시 (주)KT노조 중앙위원장 김구현과 (주)KT노조 정책3국장 최장복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의자는 부산지방본부 위원장으로 가담정도 경미한 점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5. 범죄사실 요약

피고발인은 'KT노동조합' 중앙위원장으로 2003~2011년까지 'KT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피고발인이 'KT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9. 9. 17.경 'KT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사무실 내에서 'KT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 사무국장 황성관에게 건의 오정화 명의의 우체국 계좌(600379-02-1)로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기안, 작성하게 하여 동 공문에 피고발인이 결재를 득한 후 산하 지부에 공문을 하달하여 정치후원금을 모금한 후 부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3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1명에게 모금한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음.